

일상감사 의견서

수신 : 안전치수과

2016. 1.19.

접수번호	2016-3	업무주관	부 서 담 당	안전치수과 시설(토목)7급 이은주
사업명	2016년 관내1구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(연간단가)			

감 사 개 요

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2016년 관내1구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(연간단가)
- 나. 사업기간 : 2016. 1. ~ 2016.12.31.
- 다. 소요예산 : 금700,000천원
- 라. 사업개요
 - 하수관개량(D250mm~D800mm) : L=1,210m
 - 맨홀(1~2호) 신설 및 개량 : N=40개소
 - 빗물받이, 횡단빗물받이 : N=106개소
 - 계약방법 : 일반공개경쟁(지역제한)입찰

감사결과 조치의견

『2016년 관내1구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(연간단가)』 건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 일상감사 결과 아래와 같이 원가산출 등 일부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시정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울러 감사의견에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관련근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▶ **총괄금액 조정(조정액 : 감9,900천원)**

- 원 안 : 495,000천원
- 일상감사 조정안 : 485,100천원

▶ **내역서,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근거 조정**

- 잔토처리 및 폐기물처리(일위대가 제23호표~제28호표) 운반거리 및 단위중량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후 시행할 것.(성북 공통대가 적용, 산근 제36호표~제41호표 참조)
 - 운반거리 : 2~2.5km→2.1km,
 - 토사 단위중량 : 1.7t/m³→1.6t/m³

- 시멘트 운반비 및 하차비(산근 제53호표) 적용이 부적정하니 재검토 후 시행할 것.(일위대가 상 시멘트 재료비에 운반비 및 하차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)
 - 시멘트운반비 : 945원→0원(거래가격 참조)
- 이중벽관폴리에틸렌관(인력)(일위대가 제59호표~제60호표)에서 작업 인부 수량 및 장비 적용이 부적정하니 재검토후 시행할 것.
 - 배관공 : 0.0416인→0.02인, 0.067인→0.025인(품셈 이중벽관 및 다중벽관 접합 및 부설)
 - 보통인부 : 0.0416인→0.02인, 0.1인→0.025인(품셈 이중벽관 및 다중벽관 접합 및 부설)
 - 발전기, 응착기 : 0.033시간, 0.053시간→0시간(불필요한 장비 이므로 제외)
- 합판거푸집(1회)(일위대가 제107호표~제108호표)에서 외송각재 가격 적용이 부적정하니 재검토후 시행할 것.
 - 외송각재 : 407,286원→369,000원(가격정보 적용)
- 현장가공및조립(간단)(일위대가 제117호표)에서 이형철근 가격 적용이 부적정하니 재검토 후 시행할 것.
 - 이형철근 : 671,000원→590,000원(거래가격 적용)
- 고재처리(빗물받이2호) 수량 적용이 부적정하니 재검토 후 시행할 것.
 - 고재처리(빗물받이2호) : 70조→158조
- 보행안전도우미 인원 적용이 부적정하니 재검토 후 시행할 것.
 - 보행안전도우미 : 30일→10일(관내2구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작업 여건이 비슷하므로 관내2구역 인원 적용)

기타 참고사항

▶ 연간단가 작업지시 및 제비용 정산 관련

작업지시 관련

- 작업지시를 가능한 1회당 4,000만원 이하로 작업지시 및 정산조치 단, 1회당 4,000만원 이상으로 작업지시가 불가피한 공사는 예외
- 작업지시서에 작업방법(인력·기계, 주간·야간 등)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시
- 완료보고 접수시 작업방법 확인 및 작업수량 확정

제비용 정산관련 (공사설명서에 정산관련 명기)
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: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됨으로 1회 작업지시 금액에 따라 정산
- 4대 보험료 : 사후정산 철저

▶ 기타사항(하도급 부조리 근절 관련)

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 이행 철저

1. 주계약자 공동도급제

- 적용대상 :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종합+전문업체로 구성되는 공사
- 시행방법 : 종합 +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

2. 하도급표준계약서사용

- 적용대상 :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
- 시행방법 : - 하도급 계약시 「하도급 표준계약서」 사용 추진
-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사용

3. 하도급직불제

- 적용대상 :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
- 시행방법 : 종합, 전문건설업체가 직불을 합의한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

4. 하도급대금 지급예고 알림판 설치 및 SMS문자 전송

5.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철저

6. 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부조리 근절 공한문 발송

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시행철저(<http://cws.kiscon.net/main.aspx>)

통합공사관리시스템 입력 철저(<http://tpmis.seoul.go.kr>)